

# FATF 및 권고사항 검토

2014년 3월



---

# *Contents*

I. FATF 소개

II. AML/CFT History

III. FATF 권고사항

IV. 업무진행 방안

FATF는 금융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9년 G7 정상회의의 합의로 설립됨.

### FATF(Financial Action Task Force)

#### 설립 목적 및 주요활동

##### 설립목적

- 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및 국제 금융체제를 위협하는 기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, 규제, 및 운영방안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장려함.



##### 주요활동

- AML/CFT 국제 Network 구성
- AML/CFT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평가·감독
  - 각국의 AML/CFT 국제기준 이행 평가 (상호평가)
  - 미이행국가 제재 및 이행입법/제도도입 유도
- 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수법에 대한 연구, 대응수단 개발

#### 회원국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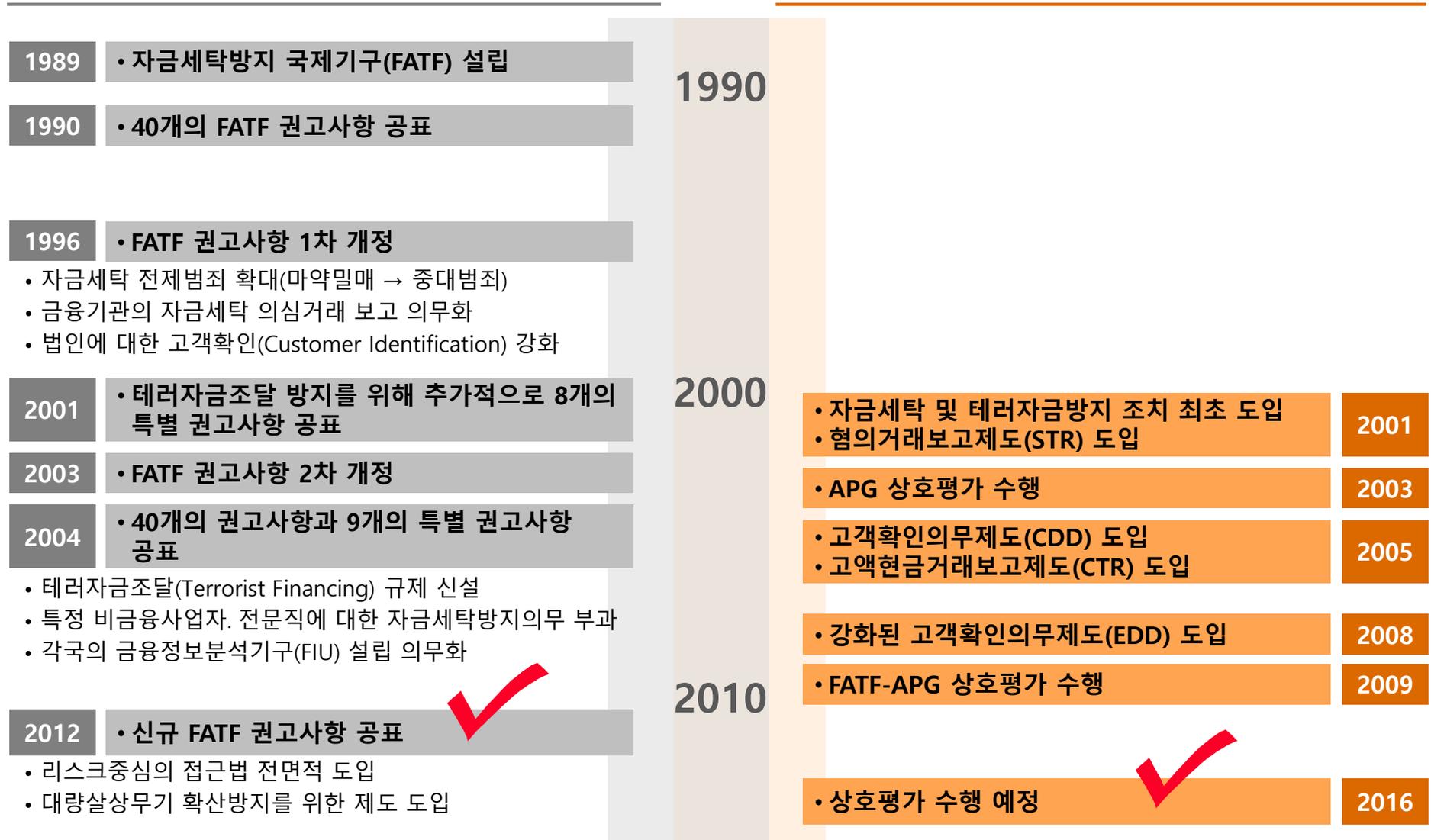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'06.8월 준회원, '09.10월 정회원 가입

지역	OECD 국가	非 OECD 국가	국제기구
유럽 (20)	영국, 아일랜드, 아이슬란드,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벨기에, 룩셈부르크, 오스트리아, 스위스, 이태리, 스페인, 포르투갈, 그리스,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, 덴마크	러시아	EC: European Commission
미주. 기타 (7)	미국, 캐나다, 멕시코	브라질, 아르헨티나, 남아공	GCC: Gulf Cooperation Council
아. 태 (9)	한국, 호주, 뉴질랜드, 일본, 터키, 말레이시아	홍콩, 싱가포르, 중국, 인도	
계 (37)	27	8	2

한국은 2002년 이후로 국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체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 신규 권고사항과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업무를 수행함.

국제 AML/CFT 체제

국내 AML/CFT 체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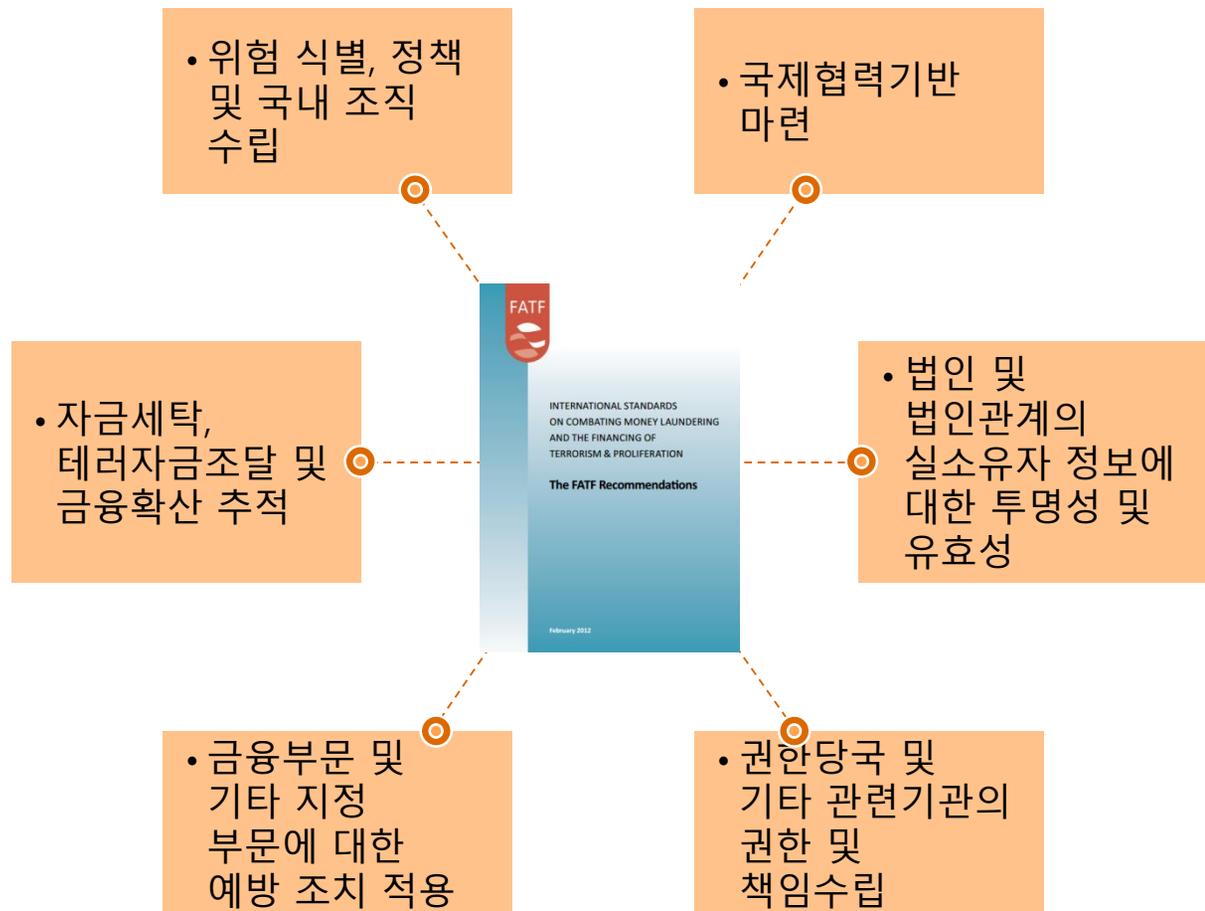
FATF 권고사항은 1990년대 처음 공표된 이후로 효과적인 자기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 전세계 180개국에서 채택함.

### FATF 권고사항 구성

#### 목적 및 배경

- FATF 권고사항은 국가가 대량 살상무기 자금확산을 포함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**종합적이고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.**
- 모든 국가는 법적, 행정적 및 운영적으로 unique하므로 해당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획일적인 조치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 따라서 **FATF 권고사항은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국제기준을 제공함.**

#### 주요 권고사항 내용



2012년 2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이후 권고사항을 대대적으로 개정함.

**기존 FATF 권고사항**

<b>A. 법률제도(Legal system)</b>
자금세탁의 처벌범위
잠정조치 및 몰수
<b>B. AML/CFT를 위한 금융기관 및 DNFBP 조치</b>
고객주의의무 및 기록보존의무
혐의거래보고의무
기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조치
FATF 권고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
규정과 감독
<b>C. AML/CFT 시스템에 필요한 조치</b>
관련 당국의 권한 및 자원
법인 및 신탁의 투명성
<b>D. 국제협력</b>
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
기타 협력
<b>* 특별권고사항</b>

**新 FATF 권고사항 (업무별 분류)**

<b>A. AML/CFT 정책과 조정 (Basic 규정)</b>
<b>B. 자금세탁과 몰수 관련 법률제도</b>
<b>C.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</b>
<b>D. 민간부문의 방지조치</b>
고객확인 의무와 기록보존
특별한 사항을 위한 추가적 조치
의존, 통제와 금융그룹
의심거래의 보고
특정 전문직과 비금융사업자
<b>E.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</b>
<b>F.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, 기타 제도적 조치</b>
규정과 감독
운영과 법 집행
일반적 요건
<b>G. 국제협력</b>

기존 FATF 권고사항은 40개의 AML/CFT 권고사항과 9개의 테러자금조달방지 (CFT) 특별 권고사항으로 구성됨.

### 기존 FATF 권고사항

#### AML/CFT 40개 권고사항

- **법률제도:**
  - 법률로 자금세탁행위 처벌과 범죄수익의 동결, 몰수를 제도화
- **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DNFBP이 취해야 할 조치:**
  - 가명계좌 금지, 위험도에 비례한 고객확인 실시
  - 금융거래 및 고객확인 기록을 5년 이상 보관
  - 범죄수익 또는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FIU에 보고
  - 금융기관 등의 FATF 권고사항의 효과적 이행에 관해 감독, 검사
  - FATF 권고사항 미이행 국가 금융기관과 거래시 특별한 주의
- **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방지 시스템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:**
  - 정부기관으로 FIU를 설립, 국제협력과 정보 분석 등 수행
  - 검찰,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수사 책임
- **국제협력:**
  - 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유엔협약의 비준, 이행
  - 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 관련 수사, 기소를 위한 사법공조 이행

####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9개 특별권고사항

- 테러자금조달 억제 UN 협약 비준, 이행, UN 결의안의 이행
- 테러자금조달을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하고, 테러자산은 동결, 몰수
- 테러자금조달 혐의거래 보고, 관련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
- 전신송금, MVTS, 현금 등의 휴대 반출입 등에 관한 특별관리

### 3. 기존 FATF 권고사항

### III. FATF 권고사항

법률제도 (R 1~3)	자금세탁의 처벌범위	자금세탁 전제범죄 <sup>1</sup>	기소요건 및 법인책임성 <sup>2</sup>	삭제된 권고사항			
	잠정조치 및 몰수	몰수와 잠정조치 <sup>3</sup>					
AML/CFT를 위한 금융기관 및 DNFBP 조치 (R. 4~25)	고객주의의무 및 기록보존의무	금융비밀법 <sup>4</sup>	고객확인(CDD) <sup>5</sup>	정치적 주요인물 <sup>6</sup>	환거래 계약 <sup>7</sup>	신기법 및 비대면 거래 <sup>8</sup>	
		제3자 고객확인 <sup>9</sup>	기록보관 <sup>10</sup>	비정상 거래 <sup>11</sup>	비금융전문직 (CDD) <sup>12</sup>		
	혐의거래보고의무	혐의거래보고 <sup>13</sup>	선의의 보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 <sup>14</sup>	보고기관 내부통제 <sup>15</sup>	비금융전문직 (혐의거래보고) <sup>16</sup>		
	기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조치	금융회사 제재 <sup>17</sup>	위장은행 <sup>18</sup>	기타보고 (CTR) <sup>19</sup>	기타 NFBP 및 보안거래기법 <sup>20</sup>		
	FATF 권고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	고위험국가 주의 <sup>21</sup>	해외지점 및 자회사 <sup>22</sup>				
	규정과 감독	금융기관 감독 <sup>23</sup>	비금융전문직 감독 <sup>24</sup>	가이드라인 및 피드백 <sup>25</sup>			
AML/CFT 시스템에 필요한 조치 (R. 26~S4)	관련 당국의 권한 및 자원	FIU <sup>26</sup>	법집행기관 <sup>27</sup>	법집행기관 권한 <sup>28</sup>	감독기관 <sup>29</sup>	자원 및 교육 <sup>30</sup>	
		국내협력 <sup>31</sup>	통계 <sup>32</sup>				
	법인 및 신탁의 투명성	법인 실소유자 정보공시 확대 <sup>33</sup>	신탁 실소유자 정보공시 확대 <sup>34</sup>				
국제협력 (R. 35~40)	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	국제협약 이행 <sup>35</sup>	사법공조(MLA) <sup>36</sup>	쌍방가벌성 <sup>37</sup>	몰수 국제공조 <sup>38</sup>	범죄인 송환 <sup>39</sup>	
	기타 협력	기타 국제협력 <sup>40</sup>					
특별권고사항 (SR 1~9)		UN 협약/결의 이행 <sup>1</sup>	테러자금조달 처벌 <sup>2</sup>	테러자금동결 및 몰수 <sup>3</sup>	혐의거래 보고 <sup>4</sup>	국제공조 <sup>5</sup>	
		자금이체 서비스 <sup>6</sup>	전신송금 <sup>7</sup>	비영리 단체 <sup>8</sup>	국경간 자금실물 이동 <sup>9</sup>		

**권고11. 비정상 거래**

- 금융기관은 명확한 경제적, 법적 목적이 없는, 모든 복잡하고 특이한 대규모 거래 및 특이한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. 가능한 한 이러한 거래의 배경 및 목적을 조사하고,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, 관계기관 및 회계 감사인에게 참고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

**권고18. 위장은행**

- 각국은 위장(shell) 은행의 설립 또는 활동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. 금융기관은 위장 은행과 코레스 관계를 맺거나 지속해서는 안 된다. 금융기관은 위장은행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과 사업관계를 설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
(신 권고사항 13에 반영되어 있음)

**권고19. CTR 보고**

- 각국은
  - a. 각국은 현금 및 무기명 양도성 증서의 해외유출입을 탐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의 적절한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자본 이동의 자유를 저해하여서는 안된다.
  - b. 각국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등이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, 관련기관이 이 정보를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의 적절한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.

**권고20. 기타 NFBP 및 보안거래기법**

- 각국은 변호사, 회계사 등 앞서 언급한 특정 비금융기업 및 전문직외에도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이 있는 사업자나 전문직에게 FATF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각국은 자금세탁위험이 적고 현대적이고 안전한 통화관리 기법(techniques of momey)의 발전을 장려하여야 한다.

(신 권고사항 22, 23에 반영되어 있음)

권고30. 자원 및 교육

- 각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된 모든 관련기관에 적절한 재정, 기술, 인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. 각국은 관련기관 직원의 청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.

권고37. 쌍방가벌성

- 각국은 어떠한 dual criminality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사법공조를 제공해야 한다.
- Dual criminality가 사법공조 또는 범죄인인도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, 만약 범죄구성요건인 사실을 양국 모두가 처벌하고 있다면, 그 행위를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분류하는지 여부 및 그 행위를 동일한 용어로 지칭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, 사법공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이해된다.

신규 FATF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동향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40개의 권고사항으로 구성됨.

### 新 FATF 권고사항

#### 개정 배경 및 목적

##### 개정 배경

- 자금세탁, 테러자금조달, **대량살상무기(WMD) 확산금융**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성장, 투명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.
- FATF 국제기준은 국제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글로벌 안전망을 강화하고 동시에 부패와 조세범죄 같은 시급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됨.

##### 목적

-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**권고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,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함.**
- **위험기반접근법을 도입**하여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저위험 분야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취하고 금융회사와 특정 부문의 고위험 분야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.

#### 주요 변경사항

- 정책기준 원리에 위험기반접근법을 도입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조건이 새롭게 도입됨.
- 구조변화:
  - 기존 40+9 권고사항과 특별권고사항에서 40개의 신규 권고사항으로 조정됨. (기존의 테러자금조달 관련 9개 권고사항이 40개의 개정된 권고사항으로 흡수·통합됨)
  - 논리적으로 7개의 부문으로 재분류 함.

A. AML/CFT 정책과 조정

B. 자금세탁과 몰수 관련 법률제도

C.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

D. 민간부문의 방지조치

E.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

F.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, 기타 제도적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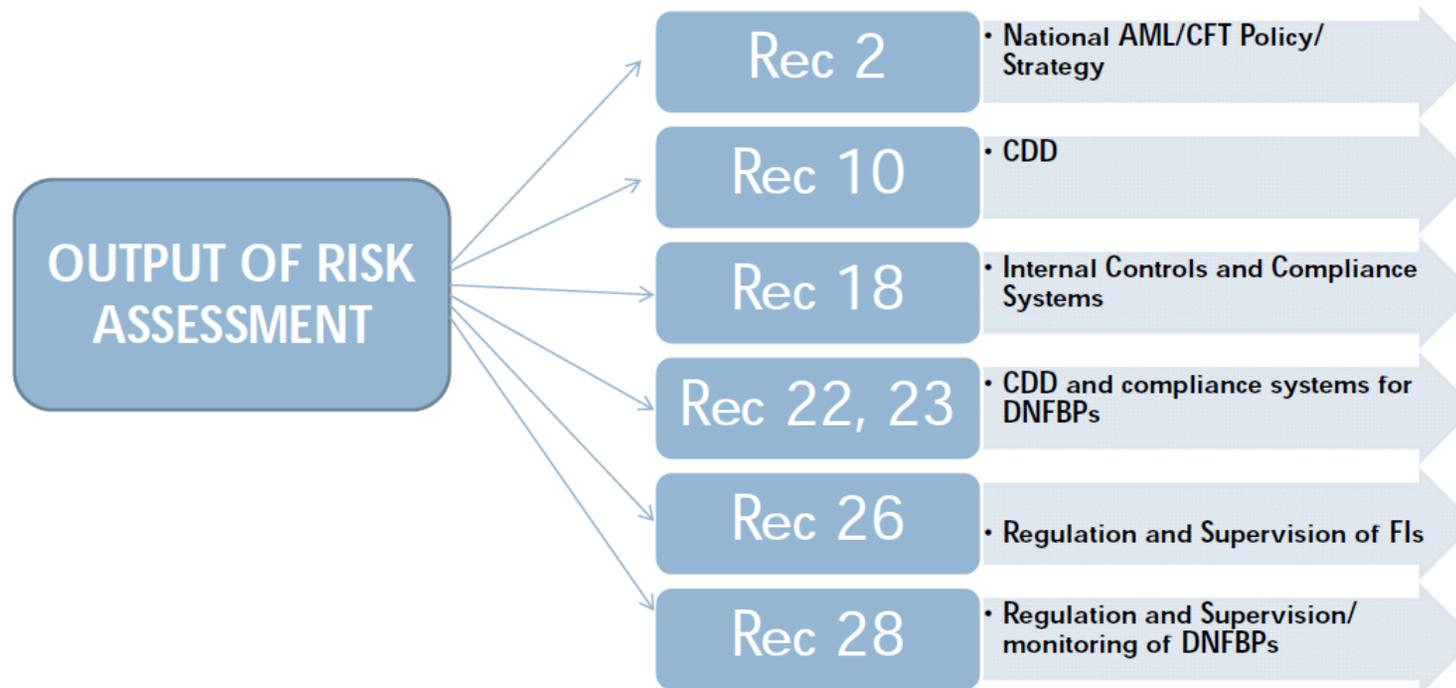
G. 국제협력

FATF 권고사항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권고사항의 주요 개정사항

#### 리스크중심 접근법 (The Risk-based approach)

- 국가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체제를 갖추어야 함.
  - 고위험에는 강화된 조치, 저위험에는 간소화된 조치를 수행함.
- **리스크중심접근법(RBA)**을 통해 특정 행위·부문의 위험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중하여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AML/CFT 체제를 구축함. **(R.1)**



FATF 권고사항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권고사항의 주요 개정사항

<p><b>투명성</b> (Transparency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인·법률관계의 소유권·지배구조와 전신송금 참여자가 불투명한 경우, 범죄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위험이 높음. <b>(R.24, 25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FATF는 기업, 신탁, 법인·법률관계의 실소유자·지배구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확보를 의무화하여 투명성 기준을 강화함.</li> <li>- 전신송금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기준도 엄격히 함.</li> </ul> </li> </ul>
<p><b>국제협력</b> (International Cooperation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제적으로 심화되는 자금세탁·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응하여, 정부기관·금융회사 간 국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함. <b>(R 36~40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권고사항 개정에 따라 수사, 감독 및 기소를 위한 국제적 정보교환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범죄자금 추적, 동결, 몰수 및 환수를 용이하게 함.</li> </ul> </li> </ul>
<p><b>집행기준</b> (Operational Standards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정 권고사항은 법 집행기관 및 금융정보분석기구(Financial Intelligence Unit)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. <b>(R.29)</b></li> </ul>
<p><b>테러자금조달</b> (Terrorist Financing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테러자금조달은 FATF 권고사항의 주요 과제로서,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9개 특별권고사항은 이번 개정을 통해 40개 권고사항에 흡수·통합함. <b>(R. 5, 6, 8, 14, 16, 20, 32, 36, 37)</b></li> </ul>

### 권고사항의 주요 개정사항, 계속

#### 새로운 위협과 우선 순위 (New Threats & New Priorities)

- FATF는 새롭고 복잡한 위협과 G20 등 국제사회가 설정한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함.
  1. **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**: FATF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「정밀화된 금융제재」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권고사항을 신설함. **(R.7)**
  2. **부패와 고위공직자**: 국내 고위공직자(PEP: Politically Exposed Person)가 고위험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의무가 강화됨. **(R.12)**
  3. **조세범죄**: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조세범죄를 추가하고, 이에 따라 조세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에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예방조치·사법조치를 적용하게 됨. **(R.3)**

#### 명확한 의무 (Clarifying obligations)

- 개정 권고사항은 금융부문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여 **금융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함.**
- 고객확인 이행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들을 위해 고객확인제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**각국이 지난 권고사항을 이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반영함.**

AML/CFT 정책과 조정		위험 평가와 RBA 적용 <sup>1</sup>	국가적 협력과 조정 <sup>2</sup>				
자금세탁과 몰수 관련 법률제도		자금세탁범죄 <sup>3</sup>	몰수와 잠정조치 <sup>4</sup>				
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		테러자금조달범죄 <sup>5</sup>	테러/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 <sup>6</sup>	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<sup>7</sup>	비영리조직 <sup>8</sup>		
민간부문의 방지조치	금융회사의 비밀유지 법률 <sup>9</sup>	금융회사의 비밀유지 법률 <sup>9</sup>	기록보관 <sup>11</sup>				
	고객확인 의무와 기록보존	고객확인제도 <sup>10</sup>	기록보관 <sup>11</sup>				
	특별한 사항을 위한 추가적 조치	고위공직자 <sup>12</sup>	환거래은행 <sup>13</sup>	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 <sup>14</sup>	새로운 기술 <sup>15</sup>	전신송금 <sup>16</sup>	
	의존, 통제와 금융그룹	제3자 의존 <sup>17</sup>	내부통제와 해외지점 및 자회사 <sup>18</sup>	고위험 국가 <sup>19</sup>			
	의심거래의 보고	의심거래 보고 <sup>20</sup>	정보누설과 비밀유지 <sup>21</sup>				
	특정 전문직과 비금융사업자	DNFBPs: 고객확인제도 <sup>22</sup>	DNFBPs: 기타 수단 <sup>23</sup>				
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		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<sup>24</sup>	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<sup>25</sup>				
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, 기타 제도적 조치	규정과 감독	금융회사에 대한 규정과 감독 <sup>26</sup>	검사자의 권한 <sup>27</sup>	DNFBPs에 대한 규정과 감독 <sup>28</sup>			
	운영과 법집행	금융정보분석원 <sup>29</sup>	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책임 <sup>30</sup>	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권한 <sup>31</sup>	현금휴대반출입 관리 <sup>32</sup>		
	일반적 요건	통계 <sup>33</sup>	지침과 피드백 <sup>34</sup>				
	제재	제재 <sup>35</sup>					
국제협력		국제협약 이행 <sup>36</sup>	국제사법공조 <sup>37</sup>	국제사법공조 : 동결과 몰수 <sup>38</sup>	범죄인 송환 <sup>39</sup>	기타 국제협력 <sup>40</sup>	

FATF 40개 권고사항 중 민간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개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기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.

**보고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사항 (20개)**

<p><b>A. AML/CFT 정책과 조정 (1)</b></p>	<p>R.1 위험 평가와 위험중심접근법의 적용 [새 권고]</p>
<p><b>C.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(1)</b></p>	<p>R.8 비영리조직 [SR.VIII]</p>
<p><b>D. 민간부문의 방지조치 (15)</b></p>	<p>R.9 금융회사의 비밀유지 법률 [R.4]</p>
	<p><b>고객확인 의무와 기록보존</b></p>
	<p>R.10 고객확인제도 [R.5] R.11 기록보관 [R.10]</p>
	<p><b>특별한 사항을 위한 추가적 조치</b></p> <p>R.12 고위공직자 [R.6] R.13 환거래은행 [R.7] R.14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 [SR.VI] R.15 새로운 기술 [R.8] R.16 전신송금 [SR.VII]</p>
<p><b>의존, 통제와 금융그룹</b></p>	<p>R.17 제3자 의존 [R.9] R.18 IC와 해외지점 및 자회사 [R.15 &amp; 22] R.19 고위험 국가 [R.21]</p>
<p><b>의심거래의 보고</b></p>	<p>R.20 의심거래 보고 [R.13 &amp; SR.IV] R.21 정보누설과 비밀유지 [R.14]</p>
<p><b>특정 전문직과 비금융사업자 (DNFBPs)</b></p>	<p>R.22 DNFBPs: 고객확인제도 [R.12] R.23 DNFBPs: 기타 수단 [R.16]</p>
<p><b>E. 법인과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(2)</b></p>	<p>R.24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[R.33] R.25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[R.34]</p>
<p><b>F.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, 기타 제도적 조치 (1)</b></p>	<p>R.33 통계 [R.32]</p>

민간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개 권고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함

**보고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사항 (20개)**

<p><b>0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FATF 권고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</li> <li>주차별 진행방안 논의</li> </ul>	<p><b>5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.14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 [SR.VI]</li> <li>R.15 새로운 기술 [R.8]</li> <li>R.16 전신송금 [SR.VII]</li> </ul>
<p><b>1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.1 위험 평가와 위험중심접근법의 적용 [새 권고]</li> </ul>	<p><b>6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.17 제3자 의존 [R.9]</li> <li>R.19 고위험 국가 [R.21]</li> </ul>
<p><b>2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.8 비영리조직 [SR.VIII]</li> <li>R.9 금융회사의 비밀유지 법률 [R.4]</li> </ul>	<p><b>7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.18 IC와 해외지점 및 자회사 [R.15 &amp; 22]</li> <li>R.20 의심거래 보고 [R.13 &amp; SR.IV]</li> </ul>
<p><b>3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.10 고객확인제도 [R.5]</li> <li>R.11 기록보관 [R.10]</li> </ul>	<p><b>8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.21 정보누설과 비밀유지 [R.14]</li> <li>R.22 DNFBPs: 고객확인제도 [R.12]</li> <li>R.23 DNFBPs: 기타 수단 [R.16]</li> </ul>
<p><b>4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.12 고위공직자 [R.6]</li> <li>R.13 환거래은행 [R.7]</li> </ul>	<p><b>9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R.24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[R.33]</li> <li>R.25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[R.34]</li> <li>R.33 통계 [R.32]</li> </ul>
		<p><b>10 주차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혐의거래 유형 검토</li> </ul>